# 全景社出对

##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시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병준

###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###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# 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9년 7월 1일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7월 3일

#### 3. 제안이유

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4조제5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던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적 위임근거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#### 4. 주요내용

「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」를 폐지함.

#### 5. 검토내용

○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제5항에 따라 구성되어 운영한 '사전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'가 법률 제14912호('17.10.24.)로 개정되어 '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'로\* 변경되었고.

<sup>\* 「</sup>자연재해대책법」제2조(정의) 1.~ 4.<생 략>

<sup>5. &</sup>quot;재해영향평가"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·예측·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.

-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또한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조부터 제5조의3까지\*\* 규정되어 조례로 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입법예고('19. 5. 31.~'19. 6. 20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#### 6. 검토의견

○ 「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상위법령 개정으로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제5조(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
제5조의2(위원의 제척・기피・회피)

제5조의3(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)

<sup>6. ~ 17. &</sup>lt;생 략>

제4조(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) ① ~ ④ <생 략>

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고, 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8. 6., 2016. 1. 27., 2017. 7. 26., 2017. 10. 24.>

⑥ ~ ⑦ <생 략>

<sup>2) 「</sup>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